

# 『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조상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  
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을 제공하는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발달장애인 종합대책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확대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.

따라서 이를 조례에도 반영해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 
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제7조 지원사업에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